

경기도 여성농민정책의 현실과 과제

최경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기연합)

1. 글을 시작하며
2.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3. 여성농민의 사회·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4.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5. 글을 마치며

I. 글을 시작하며

수입 농산물의 급증과 국내 농업보조금 감소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농업은 점차 위기를 맞고 있다. 공업화에 떠밀려 온 농업정책으로 농가인구의 고령화, 여성화는 이미 오래 전 일이고 쌀 수입개방마저 요구되어지는 현실에서 농가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2001년 현재 경기도의 농가인구는 520,757 명이며 이중 여성농가인구는 262,788명으로 50.5%를 차지하며 1970년의 49.8%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농업 주종사자중 여성농업인의 비율도 70년 30.5%에서 2000년 48.5%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실은 여성농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증가시키고 가사전담은 물론 농업노동에서의 비중을 점차 높이며 심지어는 가정 경제의 지탱을 위해 부업전선에까지 여성농민들을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98년 농림부내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2002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며(제5조 3항), 여성농민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제9조), 여성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제 10조),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제 11조), 여성농민단체에 대한 지원(제 12조), 여성농민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제 13조)'을 하도록 되어있으나 그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농업이 경쟁력 있는 품목의 농산물 생산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의 육성, 지속가능하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농업을 강화하면서 여성농민은 더욱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제 사회 복지 부분으로 나누어 현재 경기도 여성농민의 현실과 여성농민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발표문을 작성하기 위해 경기도 여성농민회연합은 여주 여성농업인 센터와 공동으로 9월부터 경기도 내의 16개 시·군에 여성농민 관련 사업과 예산 현황, 정책결정과정 참여 현황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 그중 몇 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전담부서의 부재와 담당자 및 관련부서의 비협조로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반면에 바쁜 상황에도 자료를 보내주신 시·군에 감사 드린다.

II. 여성농민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1. 생산자, 경영자로서 여성농민의 지위 인정

2001년 경기도내 전체 농가인구 중 50.5%가 여성이고 이중 47.7%가 여성농업인 주종사자로 농업의 기반을 담당하고 있다. 농가경제의 악화과 고령화로 그 비중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표 1] 경기도의 농가 및 농가인구

구분	농가				농가인구			농가당 평균가구 원수
	계	전업	1종 겸업	2종 겸업	계	남	여	
1970	254,229	190,897	36,611	26,721	1,459,152	731,697	727,455	5.7
1980	235,335	169,921	42,869	22,545	1,192,419	603,556	587,863	5.1
1990	202,595	99,315	52,750	50,530	825,807	417,057	408,750	4.1
1995	160,581	64,265	32,209	64,107	599,800	303,661	296,139	3.7
1999	149,796	69,058	24,171	56,567	548,847	274,742	274,105	3.7
2000	148,504	72,723	31,099	44,682	514,058	258,661	255,397	3.5
2001	148,922	69,736	21,015	58,172	520,757	257,969	262,788	3.5

*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2. 2.25)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 특성상 시설채소, 원예 등 여성농민이 주로 참여하는 노동집약적 발작물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안정적인 소득보장이나 노동을 경감시켜주는 밭의 정비, 발농사용 기계개발과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채소, 화훼, 축산분야의 여성농업인 비율 : 90년 12.1%→ 2000년 27.5%로 증가)

[표2] 타부문 종사자와의 1일 노동시간 비교

여성평균	가정주부	일반 취업여성	여성농업인	
			농번기	농한기
7.5시간	6.1	8.3	13.4	9.7

* 여성농업인한마당 - 여성농업인 실태조사(1999 한얼경제 사업연구원)

[표 3] 농가여성의 연간 노동투하시간(비율)

	1970	1980	1990	1995
노동투하시간	2,125	1,814	1,593	1,414
남성(%)	67.4	57.4	52.7	51.8
여성(%)	32.6	42.6	47.3	48.2

* 여성농업인 기본통계 - 여성농업인 광장

또한 농업에 기계사용이 늘면서 일어난 기계중심의 노동은 남성, 수작업 중심의 노동은 여성으로의 분리현상은 여성농민을 남성의 보조자적 역할 정도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방향과 과제>

-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인정과 영농인으로서의 지위확보가 정책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 안정적인 발작물 소득보장의 일환으로 발작물 직접지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여성농민의 노동 경감을 위해 여성용 농기계를 개발 지원하고 보급해야 한다.

2. 전문 생산 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신설 이후 여성농업인 대상 교육은 그 양과 질에서 많은 발전을 보여왔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에서의 여성농민 대상 교육은 아직도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다.

자료에서 보듯이 경기도의 경우도 그 횟수, 참여인원도 증가되었으며, 그 주제면에서도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표4 참조)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작업 환경, 정보화, 농업경영, 영농기술 교육보다는 생활·문화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원거리 교육의 경우 숙박으로 인한 가사와 탁아 부담 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특히나 전 농민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영농기술 교육, 경영교육에서 여성농민은 관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여성농가 인구 중 농업의 주축을 담당하는 49세 이하가 약 49%를 차지하나 이들이 농업의 주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후계농업인육성이 거의 전부이다. (표5 참조)

이나마 후계농업인중 여성의 비율이 4.2%밖에 되지 않고 전문영농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이나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전문인력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 (표 6참조)

[표 4] 2001년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교육명		횟수(회)	인원(명)
농촌여성지도자 교육		2	252
농촌 여성 과제 교육	농작업환경	78	1,982
	주거환경	34	884
	생활기술과제	733	24,550
	정보화	123	2,289
	농업경영	7	288
	영농기술	65	2,936
	전통식문화	260	8,100
	농산물가공	303	12,531
	전통생활문화	410	7,632
	노인	70	1,555
기타	242	8,946	
합계		2,327	71,945

* 경기도 농업기술원

[표 5] 2000년 연령별 농가 인구

합계		0-14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514,058	255,397	70,816	33,915	38,050	18,728	64,765	29,079	57,064	26,949	75,326	37,115

*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2. 2.25)

[표 6] 후계농업인 현황

구분		합계	2001년 까지	2002년 현재
후계농업인	소계	10,409	10,133	276
	남	9,967	9,724	243
	여	442(4.2%)	409(4%)	33(11.9%)

* 경기도청 농정국

<방향과 과제>

- 여성농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농민의 조건에 맞는 교육방식, 장소, 시간을 정하고 탁아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경기도 여성농민의 50%가 겸업을 갖고 있는 점이라든지 원거리의 숙박교육의 어려움을 고려해 군, 면단위 야간교육이나 마을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후계농업인중 여성농민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여성농민작목반 결성 등 다양한 전문인력육성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농산물 판매에 있어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개별농가에서도 판매를 위한 여성농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화와 연결된 마케팅 교육이 필요하다.

III. 여성농민의 사회·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방향과 과제

농촌의 생활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속에서 여성농민은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며 당연히 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농민의 사회·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가부장적이며 보수적인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타도와는 달리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을 둘러싸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업중심의 시·군보다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로 인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민들의 사회참여의식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정치의식과 참여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1. 여성농민정책 추진체계의 정비와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과 체계는 과거 군지도소 내 생활개선회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보다는 오히려 후퇴한 조직체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여성농민정책 또한 여성전체의 지위상승과 보조를 맞추지 못한 채 사회의 변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가인구의 50.3%를 차지하며 15세 이상 농업인구의 51.1%(농림부 통계, 2000년)를 차지하는 중요한 농업노동 주체로서의 여성농업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1998년 농림부내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2002년 7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여성농민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를 비롯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가 다른 도와는 달리 여성국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은 농업관련 담당공무원이 타 업무와 함께 중앙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보조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별로 담당자가 달라 여성농민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각종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고 30%할당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편이지만 경기도 각 시군단위의 농정심의위원회 등 각종 농업분야 위원회의 여성농민 참여율은 10%내외로 매우 저조하다. (표 7 참조)

[표 7]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농민 참여에 대한 현황

시 군	위원회 종류	전체 위원수	여성농민 위원수	참여비율(%)
평택시	농정심의위원회	30	2	10
	산학협동심의위원회	20	3	
화성시	농정심의위원회	31	4	15.7
	산학협동심의위원회	20	4	
남양주시	농정심의위원회	30	9	5.1
	농지관리위원회	168	1	
고양시	농정심의위원회	30	1	3.3
안성시	농정심의위원회	31	1	3.2
여주군	농정심의위원회	30	3	9.3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17	1	
	농업단체협의회	7	1	

* 각 시 군청 농림과

<방향과 과제>

- 농림부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어 농가도우미제도, 여성농업인센터 등 여성농민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군의 자치단체와의 업무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어려우므로 각 시·군까지 여성농민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부서 설치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여성농민관련 사업을 담당할 담당자를 세우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 5조 3항에 따르면 농림부장관 및 도지사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재교육과 여성농민정책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양적·질적인 여성농민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하며 이때 여성농민이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농관련 각종위원회의 여성농민 참여율을 높이고 각 자치단체장 산하에 '여성농업정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도록 한다.
- 여성농민정책은 내용상 농업정책과 여성, 교육, 보건, 복지정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간의 상호 업무조정 및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표 12] 경기도 보건(지)소의 현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동(洞)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31	8	5	119	7	161

* 보건소 대표 홈페이지 chc.mohw.go.kr

현재 사립 병, 의원은 경제적인 영리추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대부분 편재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도 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이 가운데 농촌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나 간호사만을 배치하여 정작 위급한 상황에는 대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 분야에서 여성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책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여주, 남양주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농가도우미제도 이다. 남양주, 여주군 지역에서 시작되어 평택, 이천, 안성, 화성, 광주, 포천에서는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농가도우미제도는 출산 전 · 후 60일 범위 내에서 최대 30일 동안 1일 도우미 이용료 27,000원의 80%인 21,600원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2002년 10월 현재 경기도내에서 농가도우미제도를 이용한 수는 219농가이고 1억 4천 1백만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다.

<방향과 과제>

- 읍, 면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질을 높여서 여성농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간호사만 배치된 곳은 공중보건의와 공중한의사를 배치하여 만성질환과 근 골격계 등의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여성농민들의 평생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농가 도우미제도를 확대하여 교육, 질병, 경 · 조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야 한다.

2. 문화, 교양

과거 우리농촌은 각 부락마다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농요나 세시풍속을 즐겨왔다. 그러나 점차 고령화, 공동화되어가면서 농촌에서 전통문화를 계승받을 인력이 없는 이유로 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소멸되고 있다.

또한 공연, 전시 등 문화적인 여건은 도시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표13참조)

[표 13]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율(2000년)

구 분	전 체(%)	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
전국	39.9	32.6	11.7	9.5
동	44.6	36.9	13.0	10.7
읍 · 면	21.7	16.6	6.7	4.6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1

[표 14] 희망하는 여가 시간 활용 내용

단위: 명(%)

구분	응답자 수
취미, 교양을 위한 기능이수	301(49.3)
농외 취업을 위한 기능 이수	99(16.2)
농업 관련 기술 교육	77(12.6)
사회 봉사 활동	67(11.0)
기 타	28(4.6)
휴식	17(2.8)
없다	22(3.6)
계	634(100.0)

* 전북 여성농민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 여성농민정책의 집행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대

여성농민 관련 예산의 범위를 여성농민 대상 사업예산만으로 한정하였으며, 여성복지 관련예산과 보육관련 예산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제외시켰다. 또한 농업관련 예산의 성별 영향에 따른 예산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자료의 데이터는 엄밀한 의미에서 여성농민 관련 예산이라 하기 어려우나 여성농민이 정책시행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고려하여 범위를 한정하였음을 밝혀둔다.

2002년 농림부내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은 총 14,587백만원으로 전체 농업예산의 0.2%에 불과하다. 이중 여성농민 관련 직접예산은 3,209백만원으로 0.04%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산 배정은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수립 의지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전체 농업관련 예산은 약 3천167억원이다. 그 중 여성농민 관련 예산은 78억9천여만원이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와 농가도우미사업의 자부담 예산을 포함한 예산액을 합하면 83억3천9백만원이다.

그나마 각 지방자치단체의 확보된 예산도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중앙사업을 보조하는 사업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대부분이다.

또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는 전국18개의 여성농업인 센터의(경기도는 용인과 여주) 정부 지원금 또한 매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각 시·군별 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각 시군 여성농민관련 예산 현황

시 군	전체 농업예산	여성농민 관련 예산	자체사업비	사용내역
평택시	30,633,027천원	11중 137,044천원	84,450천원	학자금지원, 농촌여성능력개발, 농가도우미사업 등
화성시	19,819,000천원	54,000천원	52,000천원	교육, 재배기술, 생활문화 계승, 환경시범사업, 농가도우미 사업 등
남양주시	2,065,000천원	21,974천원	13,550천원	농촌지역 여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 여성농업인 신문화체험교육, 여성농업인회지원, 농가도우미 사업
고양시	29,067,967천원	2,106천원	2,106천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안성시	192,917,000천원	?	3,000천원	경기도 여성농업인대회 참석비
여주군	60,891,000천원	323,128천원	78,642천원	여성농업인센터, 농가도우미사업, 교육 및 단체지원, 생활개선 사업 등

* 각 시군청 농림과

<방향과 과제>

- 경기도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정부보조사업과 별개로 도와 각 시·군은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사업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자체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여성농업인 센터와 같은 여성농업인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사업기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 1개 이상씩 여성농업인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자치단체 지원액을 확대하여야 한다.

IV.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향과 과제

복지부분은 워낙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여기서는 보건, 문화, 보육, 교육 등 내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복지 수준은 도로나 주거환경 등의 하드웨어적인 기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에 대비한 농가 소득수준은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보육, 의료, 교육, 문화 등 복지의 핵심 분야에서는 도·농간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 더욱 확대되었다. 현재 농촌은 인구 고령화와 여성화, 농가경제의 악화 등으로 농촌주민들의 복지 수요가

[표 12] 경기도 보건(지)소의 현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동(洞)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31	8	5	119	7	161

* 보건소 대표 홈페이지 chc.mohw.go.kr

현재 사람 병, 의원은 경제적인 영리추구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대부분 편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도 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이 가운데 농촌에 비교적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나 간호사만을 배치하여 정작 위급한 상황에는 대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 분야에서 여성농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책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여주, 남양주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농가도우미제도이다. 남양주, 여주군 지역에서 시작되어 평택, 이천, 안성, 화성, 광주, 포천에서는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농가도우미제도는 출산 전 • 후 60일 범위 내에서 최대 30일 동안 1일 도우미 이용료 27,000원의 80%인 21,600원을 보조해 주는 제도로 2002년 10월 현재 경기도내에서 농가도우미제도를 이용한 수는 219농가이고 1억 4천 1백만 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다.

<방향과 과제>

- 읍, 면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질을 높여서 여성농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간호사만 배치된 곳은 공중보건의와 공중하의사를 배치하여 만성질환과 근 골격계 등의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여성농민들의 평생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 농가 도우미제도를 확대하여 교육, 질병, 경 · 조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해야 한다.

2. 문화, 교양

과거 우리농촌은 각 부락마다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농요나 세시풍속을 즐겼다. 그러나 점차 고령화, 공동화되어가면서 농촌에서 전통문화를 계승받을 인력이 없는 이유로 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소멸되고 있다.

또한 공연, 전시 등 문화적인 여건은 도시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 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표13참조)

[표 13] 공연장 및 전시장 입장률(2000년)

구 분	전 체(%)	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
전국	39.9	32.6	11.7	9.5
동	44.6	36.9	13.0	10.7
읍 · 면	21.7	16.6	6.7	4.6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1

[표 14] 희망하는 여가 시간 활용 내용

단위: 명(%)

구분	응답자 수
취미, 교양을 위한 기능이수	301(49.3)
농의 취업을 위한 기능 이수	99(16.2)
농업 관련 기술 교육	77(12.6)
사회 봉사 활동	67(11.0)
기 타	28(4.6)
휴식	17(2.8)
없다	22(3.6)
계	634(100.0)

* 전북 여성농민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전북여성농민 634명을 대상으로 여가시간에 주로 하고 싶은 일을 조사한 결과 '취미·교양을 위한 기능 이수'가 4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의 취업을 위한 기능 이수'가 16.2%, '농업관련 기술교육' 12.6% 순으로 나타났다. 농의 활동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비해 취미, 교양을 위한 기능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여성농민들의 자기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14참조)

또한 취미나 교양으로 배우고 싶은 것을 묻은 결과 '컴퓨터' 19.6%, '요리' 15.6%, '종물' 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농민들이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무척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 취미나 교양으로 배우고 싶은 것

단위:명(%)

구분	노래	꽃꽂이	그림	홈패션	개량한복	컴퓨터	요리	풍물
응답자수	28(9.3)	33(11.0)	1(0.3)	31(10.0)	14(4.7)	59(19.6)	47(15.6)	35(11.6)
구분	글쓰기	외국어	서예	사진	생활도예	다도	수지침	기타
응답자수	6(2.0)	5(1.7)	12(4.0)	1(0.3)	4(1.3)		17(5.6)	8(2.7)

* 전북 여성농민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여성농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농민들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시기, 방법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방향과 과제>

- 문화 주체 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확충한다고 여성농민들의 문화적 상실감을 해소할 수 없다. 시설확충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비빈 여성농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먼단위에서의 문화, 교양활동이 적극 지원되어야 한다.
 - 2002년 농림부의 지정을 받고 사업을 시작한 여주와 용인의 여성농업인 센터에서는 건강교실, 노래교실, 플라워디자인 전문가 교육, 수지침, 발 관리 교육, 가족머리 손질교육, 정보화 교육 등 농촌지역 여성들이 원하는 각종 취미교실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방과후 아동들의 공부방, 보육, 노인 건강교실, 고충상담, 여성농민 교육 등도 여성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여성농업인 센터를 보다 많은 지역의 여성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각 시, 군단위로 확대시켜야 한다.

3. 아동보육

농촌과 도시는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보육정책은 도시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IMF 금융체제 이후 농촌 귀농 인구가 늘고 젊은 연령층의 인구 증가와 편부모, 조부모 가족의 증가는 농촌보육의 필요성을 한층 증대시키고 있다.

또 경기도는 수도권과 가까운 시설택소와 화훼를 위주로 한 근교농업이 발달하였고 이는 앞으로도 젊은 여성농업인력을 더욱 필요로 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경기도의 전체보육기관 중 국, 공립 탁아소의 비율은 4%에 그치고 있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젊은 여성농업인이 질실하게 필요로 하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은 거의 없다.

[표 16] 보육기관의 수와 보육형태

구분	총계	국, 공립	민간	직장	가정(놀이방)
전국	21,267	1,294	12,311	195	7,467
비율	100%	6%	58%	1%	35%
경기	5,285	225	2,798	27	2,235
비율	100%	4%	53%	1%	42%

<방향과 과제>

-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농촌지역에서부터 실시해야 한다.
-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최소 1개면에 1개소 이상 농촌형 소규모 국,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 농촌지역 병설유치원의 운영시간을 늘리고 차량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급식비 지원을 해야 한다.
- 농촌지역의 40인 미만 국, 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및 취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

4. 농촌교육

농촌교육의 문제는 농촌의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이농현상의 가속화,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생수 감소 그에 따른 소규모 학교의 증가 및 교육조건이 취약 그 결과 누적적인 학습결손 및 학력 저하로 인한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 가중, 그로 인한 이농의 자극 등으로 나타난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상 도농 복합도시가 많고 기존의 시지역과 군지역의 학교 시설 면에서 격차가 많이 있으며 아파트 밀집지역은 학교 부지의 부족으로 과밀학급이 발생되고,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무차별적으로 통, 폐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학교의 공동화 현상은 한편으로는 농촌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도 있으나 상급학교(중학교)간의 격차가 심하여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위장 전입, 일시 퇴거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시로 통학하는 학생의 증가도 큰 요인이다.

[표 17] 여주군 관내 2002년 초등학교의 학생수 및 학급수 비교

	1개 읍	9개 면	계
학교수	2개(7.1%)	26개(분교6개)92.9%	28개
학급수	88개(30.4%)	201개(69.6%)	289개
학생수	3,754명(42.6%)	5,059명(57.4%)	8,813명

* 경기도 여주 교육청

[표 18] 평택시 관내 2001년 초등학교의 학생수 및 학급수 비교

	시(13개 동)	읍,면(1읍 8개 면)	계
학교	20개(43.5%)	26(분교5) 56.5%	46개
학급수	628개(67.4%)	304개 (32.6%)	932개
학생수	26,270명(74.5%)	8,978명(25.5%)	35,248명

* 평택시 기본통계자료 2001

한편 2002년 3월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급식 실시율은 초등학교 99.9%, 중학교 72.5%, 고등학교의 경우 97.3%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급식은 안정성과 급식비 부담 등의 이유로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질 낮은 수입 농산물의 사용 등으로 집단 식중독의 위험마저 안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과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려주기 위해 마련된 농어촌 특기 적성 교육은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표 19] 경기도 각급 학교의 급식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전체	급식	백분율	전체	급식	백분율	전체	급식	백분율	전체	급식	백분율	전체	급식	백분율	전체	급식	백분율
940	826	87.8%	956,758	738,210	77.1%	424	280	66%	384,591	252,557	65.6%	311	258	82.9%	329,606	233,562	70.8%

* 2001 경기 교육청 연감

<방향과 과제>

- 농어촌 교육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학생1인당 1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특기적성교육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학습도 늘려야 한다.
- 우수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Ⅵ. 글을 마치며

WTO 개방농정 하에서 팔마저 수입개방의 거센 물결을 타고 있는 우리 농업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민족의 식량안보와 환경보존, 전통문화유지, 푸른 환경제공 등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농업은 우리 인류가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산업이다. 이러한 농업을 힘있게 지탱하고 있는 절반의 책임자 여성농민에 대한 올바른 가치 인식과 역할에 걸맞는 정책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농업경영에서의 여성농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여성농민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2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제정하여 여성농민이 법적, 제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에 비해 지방 정부는 중앙의 사업을 보조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지역에서 여성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여성농민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지방농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정책으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농업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색에 맞는 농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자연조건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농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다른 농정의 목표와 수단으로 차별화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갈수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정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여성농민이 적극 참여하고 여성농민정책도 적극 개발하여 여성농민이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